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6-49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년 6월 2일

라. 회부일자 : 2016년 6월 7일

3.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사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의 내용을 법에 맞게 개정·정비하여 원활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사·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조직 등) 조항이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조항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수정(안 제1조)
- 2) 조례 제정 당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으나,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근거 조례를 수정(안 제9조제4항)
- 3) 센터 명칭 표시 삭제 (안 제2조제3항, 별표1)
- 4)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59호, 2016.3.2., 일부개정] 제35조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은 2012년3월13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